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6
----------	------

제출년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본오아이사랑놀이터 개관에 따른 시설의 다양화로 시설 사용료 수납근거 마련
- 이용 및 대여에 따른 분실·훼손에 대한 변상 등의 세부기준 마련

주요내용

- 이용 및 대여자료의 분실·훼손에 따른 변상 기준 정비(안제17조제2항)
- 이용료 납부대상자의 범위 확대 및 사용료 용어 정비(안제18조제1항)
- 사용료 용어 정비(안제18조제2항)
-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안제18조제2항제3호)
- [별표 2] 변상료, 시설사용료 규정 신설
- [별표 3] 시설사용료에 대한 환불규정 신설

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4

사전예고(결과) : 붙임5

- 입법예고 : 2022. 7. 25. ~ 2022. 8. 19.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6
- 방침결정문 : 붙임7

< 불임 1 >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사용료 등과 이용 및 대여자료의 분실·훼손에 따른 변상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제1항 중 “도서·장난감 대여자 및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제17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사용·이용하는 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여료와 이용료는”을 “사용료 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여료와 수강료를”을 “사용료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용료”를 “수강료”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2호다목”을 “제2항제2호다목 및 제3호마목”으로 한다.

3. 시설 사용료 반환

- 가. 시의 사정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 나.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 다. 신청인의 체험실 이용가능 연령이 지난 경우
- 라.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 마. 대관 신청자 본인의 의사로 이용을 포기한 경우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보육정책과
입 안 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보육정책과장 정 명 현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보육정책팀장 김 진 의
	담당자 성명 · 전화	김 혜 지 (행정 2266)

[별표 2]

사용료 및 변상 등의 기준(제17조 관련)

1.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 및 변상료

구 분		금 액	비 고
장난감 도서관	영유아 및 보호자 대상	대여료	연 10,000원
		대여횟수 1~15회 이하	구매가격의 100% 변상
		대여횟수 16~30회	구매가격의 80% 변상
		대여횟수 31~45회	구매가격의 50% 변상
		대여횟수 46회 이상	구매가격의 30% 변상

- ▶ 대여기준: 장난감 1회 2점 이하, 도서 1회 5권 이하
- ▶ 대여기간: 대여일로부터 14일 이내

2. 프로그램 수강료

프로그램명	대 상	수 강 료	비 고
육아지원프로그램	영유아 및 보호자	10,000원 이하	- 수강료는 1회 기준 - 필요 시 재료비 별도 수납할 수 있음.
보육교직원 교육 및 세미나	보육교직원	20,000원 이하	

3. 시설 사용료

구 分		사 용 료		기 준	비 고
영아놀이실 및 자유놀이실	개인	10,000원		연간	-
	기관	5,000원		회당	기관 이용기준: 관내 어린이집
	카드 재발급비	3,000원		-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
유아체험실	개인	2,000원		회당	-
	기관	20,000원		회당	기관 이용기준: 관내 어린이집
상담실	검사비용	20,000원 이하		필요시	-
	상담료	10,000원		회당 (5회기부터)	-
대관요금	다목적강당	이용료	40,000원	2시간	-운영시간 외는 대관요금의 20% 가산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 시간마다 기준사용료의 50%를 가산하며,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계산 -수용인원 · 다목적 강당: 180명 · 교육실: 55명
		냉난방비	20,000원		
		빔프로젝트	10,000원		
	교육실	이용료	20,000원		

*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제17조제3항 관련)

구 分		감 면 대 상	구 비 서 류
-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 - 프로그램 수강료 - 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신분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신분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가족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의 경우)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신분증, 행복플러스카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다자녀 가정의 경우)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외국인등록증

[별표 3]

사용료 등의 환불기준(제18조 관련)

1.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 환불 기준(제18조제2항제1호 관련)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센터의 운영이 종료되거나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사업이 종료된 경우	센터운영 및 도서·장난감 대여가 종료된 날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월할 계산하여 환불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까지의 금액을 뺀 차액

2.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기준(제18조제2항제2호 관련)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	프로그램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프로그램 개시 이후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수강생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프로그램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운영시간의 1/2경과 전 (1회 이상 운영 프로그램에 한함)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총 운영시간의 1/2경과 후 (1회 이상 운영 프로그램에 한함)	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운영시간이란 미리 공고한 수강료 징수 기간 중 운영시간을 말함 · 환불금액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함 	

3. 시설 사용료 환불 기준(제18조 제2항 제3호 관련)

- 놀이체험실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센터 운영이 종료되거나 체험실 이용가능 연령이 지난 경우	센터 운영이 종료되거나 체험실 이용가능 연령이 종료된 날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월할 계산하여 환불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까지의 금액을 뺀 차액

- 대관요금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한 날	이미 납부한 대관료 중 이용하지 않은 날의 대관료 전액
센터의 운영 종료 및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센터 운영 종료 및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한 불가능한 날	이미 납부한 대관료 중 이용하지 않은 날의 대관료 전액
시설 이용 신청자가 이용 개시 2일전까지 대관 취소 사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대관 신청 취소 사유서를 제출한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일전: 대관료의 100% · 3일전: 대관료의 70% · 2일전: 대관료의 50%

< 불임 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이용료 등) ① (생 략)</p> <p>② 사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이용 및 대여자료의 분실 · 훼손에 따른 변상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③ · ④ (생 략)</p> <p>제18조(납부 및 환불) ① 도서 · 장난감 대여자 및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대여료 와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여료와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1. (생 략)</p> <p>2.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 가.~다. (생 략)</p> <p>〈신 설〉</p>	<p>제17조(이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사용료 등과 이용 및 대여자료의 분실 · 훼손에 따른 변상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납부 및 환불)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사용 · 이용하는 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p> <p>② ----- 사용료 등은 ----- . ----- ----- 사용료 등을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수강료 -- 가.~다. (현행과 같음)</p> <p>3. 시설 사용료 반환 가. 시의 사정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 지된 경우 나.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다. 신청인의 체험실 이용가능 연령 이 지난 경우</p>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9-36
------------	------

제안년월일 : 2022년 10월11일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장

□ 수정이유

-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목을 “이용료 등”에서 “사용료 등”으로, 조항에 “이용료”를 “사용료”로 수정하고, 제1항을 수정함 (안 제17조)
- 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나목부터 마목을 가목부터 라목으로 수정 (안 제18조제2항)
- “제3호마목에 따른 이용료”를 “제3호라목에 따른 사용료”로 수정 (안 제18조제3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의 제목 “(이용료 등)” 을 “(사용료 등)” 으로 한다.

안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이용료” 를 각각 “사용료” 로 한다.

-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 물품을 대여하는 사람에게 비용(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안 제18조제2항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호마목에 따른 이용료” 를 “제3호라목에 따른 사용료” 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7조(이용료 등) ① (생략)</p> <p>② 사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이용 및 대여자료의 분실 · 훼손에 따른 변상 등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③ · ④ (생 략)</p> <p>제18조(납부 및 환불) ① 도서 · 장난감 대여자 및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7조(이용료 등) ① <u>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사용·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이용료 등과 물품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u></p> <p>② 사용료 등과 이용 및 대여자료의 분실 · 훼손에 따른 변상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6.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8조(납부 및 환불)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사용·이용하는 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p>	<p>제17조(사용료 등) ① <u>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 물품을 대여하는 사람에게 비용(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u></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6.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8조(납부 및 환불) ① (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u>대여료와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대여료와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u>, 그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1. (생 략)</p> <p>2. 프로그램 <u>이용료</u> 반환 가.~다. (생 략)</p>	<p>② ----- - <u>사용료 등은</u> ----- -----. ----- ----- ----- <u>사용</u> <u>료 등을</u>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수강료</u> -- 가.~다. (현행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 가.~다. (개정안과 같음)</p>
<p><u><신 설></u></p> <p>③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이용료 반환은 신청인 본인이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p>	<p><u>3. 시설 사용료 반환</u></p> <p>가. 시의 사정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p> <p>나.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p> <p>다. 신청인의 체험실 이용가능 연령이 지난 경우</p> <p>라.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p> <p>마. 대관 신청자 본인의 의사로 이용을 포기한 경우</p> <p>③ 제2항제2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 따른 이용료 등 의 반환은 신청인 본인이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p>	<p>3. ----- <u>< 삭 제 ></u></p> <p>가.~라. (개정안 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p> <p>③ 제2항제2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 따른 사용료 등 의 반환은 신청인 본인이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p>